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10. 5.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첨단물류과	담당 자	• 과장 한성수, 사무관 강운진 • ☎ (044) 201-4006, 4013	
보 도 일 시	2020년 10월 6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6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능형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강화

-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시 구축비용 저리용자,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 부여 -
- 이를 위한 「물류시설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(물류시설법 개정, 10.8 시행)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물류시설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.
 - 해당 제도는 AI, 로봇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먼저,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,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.

- 특히,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**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(예비인증 포함)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.**

- 아울러,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**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고, 스마트물류센터 신축·개축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**

○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*될 경우,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**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.**

*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,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,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,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,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

□ 국토교통부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“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‘21년부터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”이 라고 하며, “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강윤진 사무관(☎ 044-201-40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